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 : 강희향 의원)

의 안 번 호	16-120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1. 23.

발 의 자 : 강희향 · 김영미 · 신종갑

유호렬 · 이봉수 · 이필례

이학래 · 허정행(8명)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·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마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마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시행하여 관광마포의 이미지 향상 및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해설사 선발,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~ 제9조)

라.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-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
-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
-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 등
-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, 문화재,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

- 마.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(안 제11조)
- 바.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(안 제12조)
- 사.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(안 제13조)
- 아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14조)

### **3. 관계법령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

### **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**

### **5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11. 25. ~ 11. 30.(의견제출 없음)
- 다. 조례안 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관광자원"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마포구"라 한다)의 역사 · 문화 · 예술 · 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.
2. "문화관광해설사(이하 "해설사"라 한다)"란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운영계획 수립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 · 배치 ·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해설사 자격)**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.  
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.

**제5조(해설사의 직무)**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역사 · 문화 · 예술 ·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
  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  3.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
- ② 해설사는 구청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.

- 제6조(해설사 선발)**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.
-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,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해설사 및 마포구에서 선발·위촉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7조(문화관광해설사증)**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증(이하 "해설사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해야 한다.
-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.
-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해설사증에 규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8조(교육)**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·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9조(운영 등)**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- 제10조(예산 지원 등)**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1.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
  2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
  3.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
 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, 문화재,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**제11조(배치)**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, 활동실적
2. 해설사의 활동 태도
3.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
4.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,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
2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
3.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
**제12조(표창)**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3조(사무위탁)**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 관 계 법령

## 「지방자치법」

(시행 2015.6.4.)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## 「관광진흥법」

(시행 2016.8.4.) [법률 제13958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**제48조의4(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·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)**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(認證)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·교육과목·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,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48조의7(인증의 취소)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
2.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**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